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44 호

2003 년 11 월 14 일 금 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13호(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 3
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01호(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11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02호(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중개정규칙)----- 14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36호(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4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38호(지방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통지서공시송달공고)--- 4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39호(남동구열림쉼터위탁운영체모집공고)----- 4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40호(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공고·열람)----- 5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43호(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 52
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열람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1. 14.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713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4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중 “영제59조제2항”을 “영제1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영제59조제1항”을 “영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제33조의2제4항”을 “법제144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내지 제3호 및 별지 제5호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200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44조제2항제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계획법과 통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 (2002.2.4공포 법률 제6655호) · 시행(2003.1.1)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국 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일관된 법규행정을 실시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개발·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의 상향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관련 별표)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위 반 행 위	부 과 기 준	관 련 법 규
1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이용목적의 변경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취득 일로부터 아래의 기간(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심의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이 경과하는 경우 - 2년초과 2년6월이내 - 2년6월 초과	토지가격의 5/100 (한도액 : 2백5십만원) 토지가격의 10/100 (한도액 : 5백만원)	법제144조제2 항제2호 법제144조제2 항제2호
2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토지가격의 10/100 (한도액 : 5백만원)	법제144조제2 항제2호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부과 · 징수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부과 · 징수결정통지서

1. 귀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께서는 다음과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규정 및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대한과태료부과 · 징수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 ·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 1.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1부. 끝.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 통지용)				과태료 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구청 통보용)				영수필 통지서 (개인 보관용)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제	호	회계 년도	년도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세입과목	장) 세외수입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잡수입 목) 과태료수입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위반 사항				위반 사항				위반 사항				위반 사항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납부 기한	년 월 일			납부 기한	년 월 일			납부 기한	년 월 일			납부 기한	년 월 일		
납부 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납부 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납부 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납부 장소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위 과태료는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과 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우체국 에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시중은행·농협· 우체국 (인) 수 납 일부인				위의 금액을 영 수하였기에 통지합 니다. 년 월 일 시중은행·농협· 우체국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 수납일 부인 세입징수관 귀하				위의 금액을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시중은행·농협· 우체국 (인) 수납일 부인 취급자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과기관			⑤ 납부통지서 번호	
	⑥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제기통보서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 자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원
	⑥부과기관		⑦이의제기일자	

- 첨부 :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1. 14.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01호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주관 실·과장”을 “주관 실·과·소장”으로 하며,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목을 “입법예고”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등의 단순한 집행 및 자구수정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예고문의 작성)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을 “인터넷, 신문, 방송”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를 “행정절차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안이유
- 행정절차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2003.7.1)됨에 남동구 법제 사무처리규칙중 입법예고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인용 범조항 등을 조정하여 법제사무처리의 적합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보건소의 자치법규 정비절차 현실화(안 제4조제1항)
 - 법제정비시 입법예고절차의 의무화(안 제11조 내지 제12조)
 - 입법예고 방법중 “인터넷”추가
 - 공청회에 관한 준용규정 개정(안 제19조)
- *****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1. 14.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02호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라 함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남동구행정기관”(이하 “구산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구본청 실·과, 구의 회사무국 및 구의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공용차량”이라 함은 차량총괄관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칙은 구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차량정수관리 및 차량등록관리

제5조(배정요청) 구산하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구산하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의 업무처리량·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구산하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한 때에는 [별표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협의) 구산하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구산하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구산하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차형 변경 승인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 변경은 구산하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구산하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이거나 또는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구산하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 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구산하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6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구산하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를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구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확인서를 해당 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산하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승인확인서에 등록말소 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고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구산하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당해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18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구산하기관의 장은 관용차량 담당주무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구본청의 경우 차량총괄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차량 관리방법) ① 구산하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유지비 예산 등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구산하기관이 보유하는 관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용도나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로부터 1일 이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배차승인)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차량 집중관리부서는 구산하기관의 동호회 및 공공기관에서 차량 협조요청 시 사업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배차를 승인할 수 있다

제22조(유류구입 등) 구산하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유류사용 정산) ①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구산하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록관리) 차량총괄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배치하여야 하며 구산하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7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9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10호서식]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5조(차고운영) ①구산하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등을 갖추어 운영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구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지도·점검 등) ①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구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7조(근무지침) 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제28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승용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6.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제29조(운전주의 의무)①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의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30조(사고보고)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담당자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1조(안전교육 등)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운전원 교류)차량총괄관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산하기관의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관용차량 직접운전

제33조(차량직접운전)구산하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차량점검)①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배차실 또는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반납 시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차량의 반납)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의 관리·운영에 관한 자율권 확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부령 제111호)이 폐지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을 전문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규칙상의 용어정의 및 관용차량관리규칙의 적용범위등 규정
(안 제1조 내지 제4조)
 - 관용차량의 정수배정의 절차 및 차량등록절차등의 기준을 정함
(안 제5조 내지 제17조)
 - 차량운행관리를 위한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8조 내지 제26조)
 - 운전원 관리 및 소속 공무원의 관용차량 직접운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7조 내지 제35조)
-
- *****
-
- *****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차종	차형	배정대상	내구연한
승용 (전용)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용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청장 ○ 구의회 의장	차량의 최초 등록 일로부터 5년간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용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부구청장	
승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용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본청	차량의 최초 등록 일로부터 5년간
승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구본청	차량의 최초 등록 일로부터 6년간
	소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승용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 구본청 ○ 구의회사무국 ○ 보건소	
	궤형 또는 다목적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하 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각종 차량을 말한다)	○ 구본청 ○ 구산하기관	
	경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 여 경형승용차를 말한 다)	○ 구본청 ○ 구산하기관	
승합형	대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대형승합차를 말한다)	○ 구본청	차량의 최초 등록 일로부터 6년간
	중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형승합차를 말한다)	○ 구본청	차량의 최초 등록 일로부터 6년간
	소형승합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소형승합차를 말한다)	○ 구본청 ○ 구산하기관	

구분	차량종류	배정대상	대기기간
화물용	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 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구본청 ○ 구산하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 일로부터 6년간
	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이 3톤초과 10톤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 구본청 ○ 구산하기관	
	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 인 것으로서 총 중량이 3톤이하인 차량을 말함)	○ 구본청 ○ 구산하기관	
	경형화물차 (배기량 800cc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 구본청 ○ 구산하기관	
특수용	청소차	○ 구본청 ○ 구산하기관	차량의 최초 등록 일로부터 6년간
	구급차	○ 구본청 ○ 보건소	
	진료차	○ 구본청 ○ 구산하기관	
	분뇨차	○ 구본청 ○ 구산하기관	
	급수·살수차	○ 구본청 ○ 구산하기관	
	농림방재차	○ 구본청 ○ 구산하기관	
	이동수리차	○ 구본청 ○ 구산하기관	
	트럭트렉타	○ 구본청 ○ 구산하기관	
	트레일러	○ 구본청 ○ 구산하기관	
	렉카차	○ 구본청 ○ 구산하기관	
	소방차	○ 구본청 ○ 구산하기관	
	기타 특수차	○ 구본청 ○ 구산하기관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 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및 좌 형 승용차
구 본 청	7대	1대 (구청장전용)	2대(부구청장전용 1대, 업무용 1대)	4대
구 의회사무국	2대	1대 (의장전용)		1대
보 건 소	1대			1대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통 근 용	가. 통근인원 · 통근거리 ·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직속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 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 를 배정
기타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 · 단속공무원 수송, 의정활동 지원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 차 형 및 대 수
도 로 사 업 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 종 단 속 용	주차관리단속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 사 무 소 용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사 업 용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 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가.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나.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기 타 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 · 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류번호
승 용 차 량	·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싼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 청소차 · 앰블란스 · 분노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 · 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소방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	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라 11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남동구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할 경우

남동구 - 가 2 - 10

② 남동구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할 경우

남동구 - 다 1 - 3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

제 목 : 차량정수배정요청

1.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정수 배정요청 내역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사용 부서	⑦ 요청 정수	⑧정수요청 구분(신규 또는 이체)	⑨차량구입 비및운영비 책정예산액	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	⑪사용 기간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별지 제 2 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㉑

제 목 :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1.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으로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종(현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⑩ 비 고
			()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㉑

제 목 : 차량교체 승인요청

1.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 일자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비 고
		()							

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년식	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	⑨ 비 고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①

제 목 : 차량정수 배정
 차종 변경승인
 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확인서 송부

1. 승인번호 : 제 호
2. 승인일자 :
3. 승인내역

등 록 할 차 량		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	차량의표시	구 분	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		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		⑨차 형	
③차 명	()	⑩차 명	()
④연 식		⑪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예의 한비과세대상차량구분		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	자 : 지 :	⑬등 록 번 호	
⑦비 고		⑭비 고	

※처리요령

-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발 신

⑨

제 목 :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인천광역시남동구관용차량관리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 승인번호 및 일자	② 차량소속 기 관	③ 차 명	④ 연 식	⑤ 기 관 번호	⑥ 등록 번호	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	⑧ 비 고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별지 제6호 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일련 번호	정수 번호	승 인		차 명	연 식	승차정원 적재정량	소속기 관	용 도	담당자 (인)	비 고
		문서번호	일 자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차량소속기관	
--------	--

[illegible]

※ 작성주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
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차량배차신청서		담당자	담당	과장	결
NO.					재
사용일시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외 명				
유 류		차량번호			
소속기관		직 급			
지 정 운전원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번호		운 전 원	
배차일시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외 명		
유 류		운행거리	Km
소속기관		직 급	
지 정 운전원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 장 (인) 실·과장 귀하			
※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송인 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점 검 내 용	상태	정비·수리 요청
1) 운행전 점검개소		1) 요청사유(정비 , 수리)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① 상태 ② 원인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오일레벨)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렉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장치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연료 및 조향장치는?		
2) 운행중 점검개소		2) 정비·수리내역(부품포함)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① 내역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는?(계기포함)		
3) 운행후 점검개소		② 전적가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 졌는가		3) 기타 기재사항
⑦ 열쇠보관은		
범례 : V양호 △요수리 ×요교환		

※ 용어정의

정비 -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수리 -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 · 차형변경, 차량교환)

1. 부서현황

가. 부서명:

나. 정 원: 명(부서장직급: 급)

다.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차종별	차형별	차명별	차량정수 배정일	등 록		배치부서	용 도
				번호	일자		

나. 증차사유(정수이체포함)

※ 작성요령

- ① 부서 · 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부서 · 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와 수입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 변경) 사유

※ 작성요령

-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 메타 사진 첨부)
-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 ⑥ 차종·차형 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⑦ 기타참고사항

라. 차량교환사유

- 1)
- 2)
- 3)

마. 예산소요판단.

- 1) 총 소요예산 : 천원
- 2) 차량 구입비 : 천원
-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 기준)
-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참고사항

- 1) 지역특수성 :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 4) 가 구 :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년간기준)

출장업무명	차량운행		승차인원			비고
	회수	거리	년간	월간	일일	
계						

※ 사업용 차량은 상기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기재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36호

재결서정보공시송달공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9~10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2003.8.26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재결서정보를 소유자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3. 11. 1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2. 사업의종류 :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9~10차>
3. 재결 일자 : 2003. 8. 26
4. 공 고 기 간 : 2003. 11. 10 - 2003. 11. 24
5. 재결서정보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남동구청(도시계획과)
 - 전 화 : (032)453 - 2662
6.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 신예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248
 - 권태송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2(16/4)
뉴서울아파트 106-204
 - 이찬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51-19(14/4)
 - 최대일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4(15/1)
 - [관계인] “해당없음”
7. 기 타

재결서정보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38호

공시송달공고

성명 및 주소 : 정낙형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2-2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서(2003.10월,11월)

서 류 : 별첨

위의 채권압류통지서를 2003년 10월,11월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주소가 불분명함으로 지방세법 제52조의 제2항에 의거 공고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3. 11.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 통지 공시송달 내역

[세무과 정수관리팀]

연번	관리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압류내역	체납액	제3채무자
1	20031023-8	정낙형		경기 부천시 상동	지방세 체납자 정낙형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52,986,570	남구청장
2	20031027-49	정낙형		경기 부천시 상동	지방세 체납자 정낙형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52,986,570	인천광역시청
3	20031103-1	정낙형		경기 부천시 상동	지방세 체납자 정낙형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	53,098,200	중부지방국세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39호

남동구열린쉼터위탁운영체모집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0-6 미래광장내 열린쉼터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시설물규모		사용료 (2년/원)	부대시설
		대지면적	건물용도(면적)		
열린쉼터	구월1동 1140-6	488.7㎡	○ 1층 - 공중화장실 61.60㎡ - 일반음식점 99.98㎡ ○ 2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36.59㎡ (정보검색실) ○ 3층 - 제2종근린생활시설 36.59㎡ (다목적실)	14,137,400	세부목록은 계약시 별도 작성

2.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단 위탁기간 만료일 2월전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1년단위로 연장 가능함)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4. 입찰서 제출기간 : 2003. 11. 12(수) 09:00 ~ 2003. 11. 17(월) 17:00

5.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3. 11. 18(화) 10:00 남동구청 5층 상설감사장

6.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또는 주된 사업장(영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3년이상 한 자로 소정의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지급각서)을 납부(제출)하고 입찰등록을 필한자

7.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시

1) 입찰참가신청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2)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3) 대리 입찰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위임장의 위임자란에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1부

4) 입찰보증금 납부확인서 또는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나. 입찰(개찰)시

1) 입찰서(우리구 소정 양식)1부

2)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8. 입찰보증금예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현금을 입찰등록일 은행 업무시간 (16:30)까지 한미은행 남동구출장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로 제출가능함)

9. 입찰보증금의 귀속

입찰보증금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제1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이 취소된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남동구로 귀속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서로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액 구청에 납부)

10. 낙찰자 결정방법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사용료 예정금액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관리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미납시 낙찰은 취소됩니다.

12. 입찰 및 낙찰의 무효

입찰유의사항의 입찰의 무효 사유와 입찰 및 낙찰 과정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 및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13. 기타

위탁기간은 2년으로 계약시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03. 11.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40호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위한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공고열람 하오니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11.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	3	9	3	특수 도로	760	서창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계	소1-2 호선	자전거 전용도로			

2.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사), 남동구홈페이지 게재, 구보 게재,

구청 및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3.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5. 첨부 : 도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543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고·열람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간석1동 900-29번지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을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453-2684) 및 교통과(☎ 453-28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당해 사업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1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900-2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로기반시설물(공영주차장)

(2) 명 칭 : “간석1동 900-2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898.0㎡(장애인-1면, 일반인-31면)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5. 사업의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3. 11. ~ 200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9. 열람기간 : 열람일로부터 20일간

10. 첨부 : 관계도서(제재 생략)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건 물 면 적 (㎡)			층 별	구 조	용 도	소 유 자		비 고	
	등 명	지 번	전 체	편 입	잔 여				성 명	주 소		
1	간석동	900-29	12.22	12.22		1층	적벽돌,스라브	주 택	이용식	남동구 간석동 900-29	425-9419	
			79.56	79.56		1층	적벽돌,스라브	주 택				
			7.46	7.46		1층	세멘벽돌,스레트	보일러실				
			1.30	1.30		1층	세멘벽돌,스라브	빈 소				
			2.31	2.31		1층	세멘벽돌,스라브	창 고				
			13.68	13.68		지하	세멘벽돌,스라브	보일러실,창고				
			7.20	7.20		지하	샷 시,스라브	창 고				
계			123.73	123.73			철조문 1식(B=2.7m), 세멘벽돌담장 14.7m, 정화조 1식					
2	간석동	900-30	73.33	73.33		1층	적벽돌,스라브	주 택	유지인	남동구 간석동 900-30	422-5467	
			4.95	4.95		1층	샷 시,스라브	주 택				
			1.40	1.40		1층	세멘벽돌,스라브	화장실				
			2.70	2.70		1층	육 조,스레트	건 사				
			2.42	2.42		1층	세멘벽돌,스라브	창 고				
			13.68	13.68		지하	세멘벽돌,스라브	보일러실,창고				
			4.95	4.95		지하	샷 시,스라브	창 고				
계			103.43	103.43			스텐레스문 1식(B=2.8m), 세멘벽돌담장 10.1m, 적벽돌담장 1.0m, 불력담장 10.2m, 정화조 1식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건 물 면 적 (㎡)			층 별	구 조	용 도	소 유 자		비 고
	동 명	지 번	전 체	편 입	잔 여				성 명	주 소	
3	간석동	900-31	73.33	73.33		1층	적벽돌,스라브	주 택	염 중 윤	남동구 간석동 900-31	425-5043
			4.95	4.95		1층	샷 시,스라브	주 택			
			5.40	5.40		1층	세면벽돌,스라브	주 택			
			3.30	3.30		1층	세면벽돌,스라브	보일러실,통로			
			13.68	13.68		지하	세면벽돌,스라브	보일러실,창고			
계			100.66	100.66			스틸레스문 1식(B=2.8m), 샷터문 1식(B=4.3m), 적벽돌담장 7.9m, 세면벽돌담장 4.7m, 정화조 1식				
4		900-32	10.29	10.29		1층	적벽돌,스라브	주 택	이 소 영	남동구 간석동 900-32	426-9646
			73.97	73.97		1층	적벽돌,스라브	주 택			
			4.14	4.14		1층	샷 시,스라브	주 택			
			9.88	9.88		1층	세면벽돌,스라브	주 택			
			3.61	3.61		1층	세면벽돌,스라브	창 고			
			1.30	1.30		1층	세면벽돌,스라브	화장실			
			13.68	13.68		지하	세면벽돌,스라브	보일러실,창고			
계			116.87	116.87			샷시문 1식(B=2.7m), 세면벽돌담장 8.7m, 정화조 1식				

